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2109호) 공포 알림

1.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2109호)이 2026. 3. 31.자로 불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정보 공포 방법 등(제2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 및 실태조사 방법 등(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신설)

2. 동 개정령은 2026년 3월 31일자 관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및 우리 처 대표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 자료 → 법령 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임.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2109호). 끝.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신자 본부(60개 전부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45개 전부서), 6개 지방청장(54개 전부서), (사)대한화장품 협회,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주무관	신재섭	사무관	김현수	화장품정책과	과장	김지연	화장품정책과	과전결 2026. 3. 31.
협조자								
시행	화장품정책과-2246		(2026. 3. 31.)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	www.mfds.go.kr
전화번호	043-719-3420	팩스번호	043-719-3400		/	sis625@korea.kr		/ 비공개(6)